

##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제도 안내

재산 변동신고시 사전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을 원하는 등록의무자인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매년11월말일까지 소속기관에 수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의의 효력은 동의철회서 제출 전까지임

### □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(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)

- ① 등록의무자는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동의확인(서명 등)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
  - 기 동의서제출자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친족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 가능
- ※ PETI를 통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 동의서는 반드시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기 동의내역은 PETI에서 조회 가능(<http://www.peti.go.kr>)
- ② 동의서에는 동의자와의 관계·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동의확인(자필서명 - '이름석자 기재')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
- ③ 동의서는 FAX나 사본이 아닌 동의확인(서명)이 기재 된 원본을 제출
- ④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·한정치산자·금치산자 이거나, 심신장애로 인해 사실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인이 동의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대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(다만, 미성년자의 대리인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)

<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>

○ 제출일자	○ 당해연도 정기변동신고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는 매년 11월30일까지 제출 및 접수가 가능 (동의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당해연도 정보 제공에서 제외)
○ 동의자 관계	○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비속만 동의 가능 (자부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는 신고대상이 아님) ○ '09.2.3 이후 여성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은 친정부모임을 유의
○ 동의자 성명	○ 성명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정보 제공기관에 등재된 이름과 다를 경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이 안될 수 있음 (예시) 류↔유, 렬↔열, 라↔나 등
○ 동의자 주민번호	○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정보 제공 불가
○ 동의자 동의확인(서명)	○ 동의자 자필서명(인감포함) 또는 손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○ 동의확인(서명)이 흐리거나 확실치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됨 ○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제출
○ 기타	○ 제출기관(강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), 제출일자 기재 ○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된 직계존비속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

※ 동의자의 관계·성명·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

### □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제출 (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)

- ①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동의했던 자 중 출가, 이혼,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함
- ② 동의철회서는 11월 말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철회시 당해연도 정기변동신고시 정보 제공안함

##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

(앞쪽)

1.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: 강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
2. 정보제공 목적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위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
3. 동의서 유효기간: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

### 4.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

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

### 5. 동의자(등록의무자 포함) 인적사항

관계	동의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제공 정보 (해당 항목에 "√" 표시)		정보 제공에 동의함 (서명 또는 인)
			금융거래	부동산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할 때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,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강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## 유의사항

1.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.
2.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,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.
3. 정보제공 범위
  - 정기 변동사항 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(산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)
  - 부동산 보유·등기 및 과세정보(지적, 건축,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)
  -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: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 중
4. 정보제공 금융기관명
  -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 -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 -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-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 -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 -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
  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
  -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 -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 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 -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 - 그 밖에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등

##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

### 1.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

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

### 2. 정보제공 등의 철회자

관계	성명	철회사유	제공동의 철회 정보 (해당 항목에 "√" 표시)		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함 (서명 또는 인)
			금융거래	부동산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를 위 사유로 철회하려고 합니다.

년 월 일

등록의무자

(서명 또는 인)

강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### 작성방법

-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결혼,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'관계'란에는 등록의무자와의 관계(부, 모, 배우자, 자녀 등)와 철회 사유(고지거부, 등록제외, 그 밖의 사유)를 적으십시오.